#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05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윤상현・구자근・김선교

이명수 · 양금희 · 박대수

박덕흠 • 엄태영 • 이헌승

윤영석 · 권명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의제1항 중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 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 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의 대화를 <u>녹음 또는 청취하지</u>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 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 수 없다-----에 의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 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 ス]) ①-----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 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 -----<u>기계적</u> 수단을 이용 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 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 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u>공개되지 아니</u>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한 자

(생략)
(생략)

]16조(벌칙) ①	
1	
<u>공개되지 아니한 E</u>	<u> </u>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	성취
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
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꼭	두음
한 대화 참여자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